

광주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5가단526078 판결 [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나6012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5가단526078 판결

전문

원고A

피고1. B

2. C

3. D

4. E

5. F

6. G

7. H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 선고 2016. 11. 9.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2. 철조망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3. 수목을 수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4. 하우스시설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철조망, 수목, 하우스시설물의 각 부지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15. 1. 5.부터 건물부지 및 수목부지의 명도시까지 월 5만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5. 전남 장성군 I 임야 1,609㎡와 J 임야 771㎡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임야들은 2015. 1. 9. I 임야 2,380㎡¹⁾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피고들은 망 K(2010. 11. 18. 사망)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임야에 접한 L 대 301㎡와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스투지붕 단층주택 69.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주택의 처마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을 침범하여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라) 부분 5㎡에 위치하고 있고, K 또는 피고들이 설치한 철조망(팬스)가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펜션 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K 또는 피고들이 경작하는 유실수 등 수목이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나) 부분 353㎡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원고는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다) 부분으로 표시하였으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수목은 (나) 부분 353㎡에 위치하고 있고, 변경 전 청구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청구취지의 표시는 명백한

오기라고 할 것이므로 (나) 부분 353㎡로 수정한다), K 또는 피고들이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의 일부가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마) 부분 16㎡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6호증,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 2. 철조망, 3. 수목, 4. 하우스시설물을 설치 또는 식재하여 이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 5㎡를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2. 철조망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3. 수목을 수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4. 하우스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 중 위 건물, 철조망, 수목, 하우스시설물의 각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위 건물, 철조망, 수목, 하우스시설물의 각 부지를 점유함으로써 인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의 범위와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전기철

별지

1) 위 임야들은 2015. 1. 9. I 임야 2,380㎡로 합병되었다.